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 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 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 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 5. 28.]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



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손실 발생사실
-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 5. 협의의 경위

[전문개정 2013. 5. 28.]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11. 23.>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 (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4. 작성일
 -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 1. 물건(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 2.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
 -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5. 작성일
 -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 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1. 23.>
 -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3.>

-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 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1.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2.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 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 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혐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 협의의 일시 · 장소 및 방법
- 2.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9조 삭제 <2008. 4. 17.>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사업예정지
-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 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 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 자의 의견서

-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 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

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사업예정지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 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 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본조신설 2019. 6. 25.]
-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 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 지해야 한다.
 -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 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7. 보상액 및 그 명세
 -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 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4. 9.>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 3. 협의경위서
 - 4. 사업계획서
 -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전문개정 2013, 5, 28,]

- 제13조(혐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혐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다.
 -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 2. 계약서
 -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4. 사업계획서
 -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4.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 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 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 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 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 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 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 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 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19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 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 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 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 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안
 -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 ·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5장 손싴보상 등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 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9,]

-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9. 10.>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1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1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2. 24.>
 -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 3. 공무(公務)
 - 4. 취학(就學)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 다.
 -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3. 5. 28.]

-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구
 -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사업

-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 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11. 23.>
 -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혐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 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16. 8. 31.. 2021. 11. 23.>
 -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2021, 11, 2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 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11. 23.>

[전문개정 2013, 5, 28.]

[제목개정 2021. 11. 23.]

-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22, 6, 14.>
 -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 1. 발행한도액
 - 2. 발행요청액
 - 3. 액면금액의 종류
 - 4. 이자율
 -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 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 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 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 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명칭
 - 2. 번호
 -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3, 5, 28,]

-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 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발행일 및 상환일
 - 2. 교부일
 -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 지하여야 한다.
 -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 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 정 2013, 12, 24.>
-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 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전문개정 2013. 5. 28.]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 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 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8. 31.>
 -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 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 또는 구(자치 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 트 이상일 것
 -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 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 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 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라한 경우
 -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 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 [전문개정 2013, 5, 28.]
-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 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 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 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 서 "주되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주되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4. 17.>
 -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주되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 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다. 공무
 - 라. 취학
 -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 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 국토교통부
 - 나. 사업시행자
 -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문개정 2013. 5. 28.]

-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 의 시설로 한다.
 - 1. 도로(가로등 · 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 3. 전기시설
 - 4. 통신시설
 - 5. 가스시설
 -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5, 9,>
 -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 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 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 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 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 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 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손실 발생사실
-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 5. 협의의 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2020. 12. 8.>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 할 수 있다.
-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7. 영업 · 농업 ·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 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 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 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 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 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보상혐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혐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혐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 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6장 이의신청 등

- **제45조(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 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 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 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 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7장 환매권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유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 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 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 한다) •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 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 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50조의3 삭제 <2016. 12. 30.>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5, 28.]

부칙 <제34400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